

---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  
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

제 목 : [후속 보도자료]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해야 합니다!  
전국의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23. 11. 20.(월)

전송매수 : 총 22매

---

### [후속 보도자료]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 조 즉각 공포해야 합니다!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23. 11. 20.(월) 오전 10시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해야 합니다!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23. 11. 20.(월) 오전 10시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
- 사회: 이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 발언1: 개정 노조법 2·3조의 의미와 1,000인 선언 취지
  - 조영선 변호사(동화 법무법인)
- 발언2: 개정 노조법 2·3조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 김유경 노무사(노무법인 돌꽃)

- 발언3: 정부와 재계의 주장에 대한 비판
  - 정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여는)
- 발언4: 헌법상 노동3권의 의미와 교수들이 나선 이유
  - 김일규 교수(강원대학교)
- 발언5: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부당성
  - 선재원 교수(평택대학교)
- 일본 법률가 등 지지 선언 소개
- 정부와 재계에 공개토론 제안
- 선언문 낭독
  - 김재민 노무사(노무법인 필)
  - 박경수 노무사(법무법인 여는)
  - 조윤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이체)
  - 위대현 교수(이화여자대학교)
- 1,000인 선언 추진단의 향후 계획 발표
- 선언문 대통령실에 전달
- 퍼포먼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한 사회적 논쟁과 국회 논의를 거쳐 최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노조법은 장기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으로서 국제노동기준과 국내의 노동법 해석에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3. 한편,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게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무리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이에 한국 사회의 지식인이자 전문가로서 이번 개정 노조법의 정당성과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통령이 개정 노조법을 신속히 공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전국의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들이 선언 참여를 추진하였고 2023. 11. 6.(월)~2023. 11. 19.(일)까지 1,067명이 선언에 동참하였습니다.

5. 이번 선언에 참여한 전국의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들이 기본적 인권에 관한 개정 노조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자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해야 합니다!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000인 선언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하였습니다.

6. 아울러 1,000인 선언 추진단에서는 내일(11. 21.)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매일 11:30~12:30)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끝.

(문의: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halee@minbyun.or.kr)

■ <첨부 1> 발언문

- 발언 1: 개정 노조법 2·3조의 의미와 1,000인 선언 취지
- 발언 2: 개정 노조법 2·3조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 발언 3: 정부와 재계의 주장에 대한 비판
- 발언 4: 헌법상 노동3권의 의미와 교수들이 나선 이유
- 발언 5: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부당성

■ <첨부 2>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문 및 명단

■ <첨부 3> 일본 법률가 등 지지 선언 소개

■ <첨부 4> 1,000인 선언 기자회견 사진

[첨부 1] 발언문

[발언 1] 개정 노조법 2·3조의 의미와 1,000인 선언 취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조영선 변호사(동화 법무법인)

실로 1953. 4. 15 노조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만의 일입니다. 강산이 7번이 바뀌고, 대법원이 판결했음에도 노조법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70년 세월과 함께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변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였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만시지탄의 안타까움마저 있습니다.

우리 노동법에 관한 전문가인 교수, 연구자, 노무사, 변호사들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기업은 산업현장의 혼란, 노사갈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노동자, 사용자 및 쟁의행위 범위, 그리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입법 절차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결국 노사관계에서 지배적 역할을 하는 홍길동의 아버지가 과연 누구인지 명확히 함으로써 오히려 노사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국제노동기구(ILO)는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과 손해배상청구가 노동3권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홍길동의 아버지를 찾아주는 법이고, 노란봉투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법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노동3권을 짓밟는 것이고, 현대자동차 등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권력 분립원칙에도 반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헌법 제37조가 언급하고 있듯이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학자들

은 헌법 및 집행불가능법안, 권력분립에 반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홍길법안, 노란봉투법안은 이러한 거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역대 대통령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왔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하여 거부권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두산중공업 배달호열사에 이어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그리고 유성·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분별한 손해·가압류의 고통에 절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죽음의 행렬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홍길동에게 아버지를 찾아 주어야 합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노사,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고, 이제까지 보여온 악순환을 넘어 더 큰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발언 2] 개정 노조법 2·3조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김유경 노무사(노무법인 돌곶)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일방적 처리’에 유감을 표명하며 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이 규정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노조법 개정안이 ‘파업만능주의법’, ‘가해자 보호법’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 왜곡 선동을 이어갔다. 이정식 장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미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 노조법 2·3조 개정의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을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련의 소송에 대해 정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그에 앞서 법원은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건 판결에서도 하청노동자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한 원청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모두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적 정당성을 거듭 확인한 마땅한 판결이다.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절차는 정당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절차 지연행위가 부당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법적인 절차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임이 분명하다. 엄중히 경고한다. 노조법 2·3조의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은 이미 충분히 갖춰졌다. 개정안의 공포를 방해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발언 3] 정부와 재계의 주장에 대한 비판

정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여는)

고용노동부와 재계는 이번 개정 노조법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은 모호한 개념이며, 이로 인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고, 사용자에게 극심한 혼란을 주고 노동조합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며 민법 등 다른 법률과의 체계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부당합니다.

우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사용한 용어로서 판례에 따라 확립된 용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3차례나 같은 취지로 결정하였고, 대구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하급심에서도 여러 차례 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므로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로 인정되어 구체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벌칙이 적용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부당노동행위죄는 고의범이므로 노조법상 사용자라는 확정판결이 있거나 노·사 간 단체교섭을 해 온 전례가 있음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부당노동행위의 고의를 인정하여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재계의 우려와는 다르게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원·하청 노사관계나 단체협약 위반을 둘러싼 분쟁도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노사관계가 합리적으로 재정립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원청 사용자가 사용자임을 부인하거나 단체협약이나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노·사 간의 교섭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고, 소송은 당연히 장기간의 분쟁상태가 노정(路程)할 수밖에 없으므로 노동조합으로서도 부득이 쟁의행위를 감행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권리분쟁도 단체교섭에서 의제로 다룰 수 있게 되면 먼저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어서 쟁의행위로 나아가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입니다. 파업이 불법적이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갖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불법 딱지가 붙지 않은 평

화로운 파업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장기 분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 오히려 노·사 간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여 산업현장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진정연대책임은 법원행정처에서도 지적했듯이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적 질서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결정, 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실행됨)에 비추어,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된다”고 판시하여 시민법 영역인 민법을 단체법인 노조법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노조법 개정안과 그 취지를 같이 했습니다. 이처럼 노조법 개정안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학설상 논의되었던 것을 입법화한 것으로서 법체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정부와 재계의 주장이 얼마나 과장되고 왜곡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설명하고 설득시킬 책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 [발언 4] 헌법상 노동3권의 의미와 교수들이 나선 이유

김일규 교수(강원대학교)

다른 법도 아닌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본가와 노동자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 속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헌법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노조법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짓밟히고 있으며, 심지어 억울하게 목숨까지 빼앗기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희생과 고통은 뒤로한 채 자본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거부하겠다는 대통령을 보며 우리 교수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참담하며, 이 나라의 노동자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권력에 대한 비판의 의무가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거부할 어떠한 명분도 권리도 없습니다. 오직 개정 노조법 2·3조를 즉각 공포할 의무만 있습니다. 더 이상 거부권 운운하지 말고 지금 즉시 개정 노조법 2·3조를 공포하십시오. 만약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열망이 높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전국의 교수들은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가 헌법상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그 날까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5]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부당성

선재원 교수(평택대학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노조법을 즉시 공포하라!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인 노동자의 생명과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적 가치를 어기고 무리한 입법을 할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노조법은 절차와 내용에서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고, 법원행정처는 무리한 개정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 노조법은 헌법적 가치를 위배하지 않았고, 법의 체계와 논리에서 무리한 개정이 아니다.

무리한 개정이 아니라는 공론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소수 기득권 세력의 요구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헌법 취지를 넘어서는 대통령의 월권 행위이며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헌 행위이다. 즉 행정권이 입법권을 폭압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공론에 따른 엄중한 경고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국의 교수·연구자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

[첨부 2]

## [전국의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문]

### 부당한 현실에 침묵할 수 없어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를 즉각 공포하십시오

지난 20년 노조법 2·3조 개정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주요 과제였다. 이는 단순한 노동문제가 아니라 기본적 인권의 문제였기에 많은 노동자들이 절박하게 외쳤고 국민이 이에 호응하였다. 그 결과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은, 하청노동에 깊숙이 관여하는 재벌·대기업 등 원청은 그에 상응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라는 것, IMF로 인하여 축소된 노동쟁의의 대상을 그 이전 노조법으로 정상화시키자는 것,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각자의 행위만큼 부담하게 하자는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이번 개정 노조법은 오래전 현대중공업 사건 대법원 판결, 최근 현대자동차 사건 대법원 판결 등과 궤를 같이한다. 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절차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개정 노조법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정식 장관은 그 일성으로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일국의 장관이 개인의 감정을 거칠게 표현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그 내용 또한 편향되고 왜곡되었다.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불법파업에 대하여 사실상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지고, 재벌·대기업 등 원청 사업장은 1년 내내 교섭과 파업으로 몸살을 앓게 되며, 결국 국가경제가 파탄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정부가 이성을 잃고 그릇된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재벌·대기업의 노무부’를 자처하는 꼴이다.

우리는 주5일제 도입과정에서 재계가 “삶의 질 높이려다 삶의 터전 잃습니다”라

는 선동을 일삼았던 것을 기억한다. 그들의 주장과 달리 주5일제는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작금의 정부와 재계도 이처럼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일삼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정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최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의 노조법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그 개정이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권고하였다. 미국판·일본판 노란봉투법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개정 노조법은 국제노동기준에 정확히 부합한다. 글로벌스탠다드를 주창한다면 이번 개정 노조법에 반대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지금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은 ‘바람 앞의 등불’이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비극적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이에 따라 거부권은 위헌적 법률, 국가재정을 파탄내는 법률, 집행불가능한 법률, 행정권을 지극히 제약하는 법률 등에 대한 최후 수단으로만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은 이와 같은 거부권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이유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입법 절차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만약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처럼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록될 것이다.

전국의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들은 한 사회의 지식인이자 전문가로서 작금의 비이성적이고 부당한 현실에 침묵할 수 없었다. 우리는 개정 노조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지난 20년 동안의 수많은 희생과 고통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본적 인권에 관한 개정 노조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11월 20일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참여자 1,067명 일동

<교수 및 연구자 등> (527명)

강경란, 강길모, 강내희, 강다점, 강민균, 강병호, 강봉수, 강수돌, 강승규, 강신준, 강신철, 강이수, 강인호, 강재구, 강정쉬, 강혜경, 강희경, 고경일, 고민지, 고부응, 고송, 고영철, 공제욱, 곽상신, 구슬아, 구은희, 구효송, 국순아, 권귀영, 권범근, 권소희, 권오섭, 권용두, 권혁태, 권혜원, 금인숙, 기영석, 김경수, 김경아, 김경원, 김경호, 김광래, 김교빈, 김귀옥, 김금란, 김누리, 김대영, 김대영, 김도균, 김도형, 김동윤, 김동조, 김동춘, 김동현, 김명수, 김명진, 김명환, 김미라, 김미련, 김미숙, 김미자, 김미정, 김민아, 김민정, 김민호, 김병태, 김상현, 김상희, 김서중, 김서홍, 김석용, 김선일, 김선진, 김성경, 김성우, 김성욱, 김성원, 김성주, 김성훈, 김성희(a), 김성희(b), 김세균, 김세진, 김소진(a), 김소진(b), 김수경, 김수용, 김순환, 김연희, 김영, 김영남, 김영록, 김영삼, 김영심, 김영인, 김용찬, 김용환, 김유경, 김유승, 김은주, 김은혜, 김의수, 김인숙, 김일규, 김재경, 김재완, 김재훈, 김정화, 김정희, 김종빈, 김종서, 김종진(a), 김종진(b), 김중호, 김주일, 김준, 김준형, 김준호, 김지연, 김지영, 김진국, 김진균, 김진석, 김진성, 김진업, 김창준, 김철식, 김철홍, 김필중, 김한성, 김한식, 김현범, 김현미, 김현양, 김현정, 김현주, 김형래, 김형진, 김형철, 김혜나, 김혜영, 김활신, 김효진, 김희라, 나원준, 나찬연, 남기정, 남미애, 남승돈, 남윤주, 남재욱, 남정희, 남중섭, 남중웅, 남찬섭, 남춘호, 노성철, 노은정, 노진철, 노태호, 라성주, 류경자, 류인왕, 류희식, 마재신, 문광일, 문병호, 문윤택, 문지선, 문현아, 민기채, 박거용, 박관성, 박귀천, 박규준, 박근태, 박노자(블라디미르 티코노프), 박미리, 박배균, 박병섭, 박병욱, 박상욱, 박상환, 박성현, 박승룡, 박승원, 박승희, 박영균, 박영식, 박완호, 박은정, 박의연, 박인숙, 박재영, 박정원, 박정희, 박종식, 박준성, 박중렬, 박지은, 박진숙, 박진영, 박찬중, 박창준, 박창희, 박철웅, 박철현, 박충환, 박현숙, 박현아, 박형금, 박형신, 박호관, 박홍규, 박효영, 방준호, 배병인, 배성인, 백수인, 백승현, 백용기, 백원담, 백정숙, 백학영, 백현주, 변상출, 봉영준, 서관모, 서동진, 서석원, 서선영, 서영배, 서영이, 서영표, 서정일, 석데리아순영, 선재원, 설현지, 성흥모, 손미정, 손석춘, 손정순, 손현숙, 손호철, 손홍국, 송병삼, 송용한, 송인덕, 송주명, 신솔아, 신옥주, 신원철, 신유정, 신은균, 신희영(a), 신희영(b), 신희주, 심은지, 심홍식, 안명진, 안병억, 안승택, 안정인, 안정화, 안철택, 양문규, 양병천, 양성렬, 양승광, 양승민, 양승호, 양종근, 양창아, 양혜림, 엄순영, 엄창욱, 오강수, 오기석, 오동석, 오영탁, 오원석, 오진숙, 오진영, 우동필, 이상수, 우새롭, 원상철, 원준식, 원효식, 위경혜, 위대현, 유권석, 유병제, 유세중, 유우창, 유운열, 유정, 유정숙, 유현미, 유형근, 육주원, 윤남식, 윤병학, 윤순진, 윤애림, 윤영삼,

윤용택, 윤자호, 윤종희, 이건근, 이건민, 이경란, 이경수, 이경준, 이경필, 이광희, 이규봉, 이갑수, 이나영(a), 이나영(b), 이나은, 이대세, 이대형, 이도흙, 이동진, 이득재, 이무성, 이미애, 이민경, 이병천, 이상희, 이성구, 이성재, 이성준, 이소진, 이수경, 이수진, 이숙현, 이승윤, 이승은, 이승철, 이승협, 이승호, 이승희, 이양순, 이영경, 이영기, 이영록, 이영현, 이왕기, 이용인, 이원동, 이원익, 이윤임, 이은실, 이은희, 이인철, 이재수, 이재유, 이재인, 이정립, 이정은, 이종석, 이종우, 이종춘, 이주하, 이주희, 이준우, 이준형, 이지홍, 이진욱, 이창민, 이철, 이태정, 이태행, 이학주, 이해진, 이현결, 이현구, 이현숙, 이혜란, 이혜지, 이호중, 이호창, 인권, 인현정, 임경희, 임미진, 임순광, 임운택, 임재홍, 임지연, 임춘성, 임현석, 장남희, 장대업, 장복동, 장상환, 장성갑, 장세훈, 장수명, 장수찬, 장영숙, 장인하, 장정훈, 장지연, 전갑생, 전명혁, 전선복, 전승주, 전용숙, 정경석, 정경은, 정경춘, 정경훈, 정기호, 정대성, 정미경, 정미선, 정민, 정병기, 정보라, 정보선, 정세한, 정석현, 정성임, 정성진, 정세은, 정숙인, 정슬기, 정양수, 정영현, 정용달, 정용택, 정용하, 정은유, 정재원, 정재호, 정종구, 정종민, 정지현, 정진상, 정창조, 정태식, 정혜리, 정홍준, 제갈현숙, 제미경, 조경배, 조규준, 조덕연, 조성식, 조승래, 조승현, 조영건, 조영배, 조영준, 조우진, 조은평, 조진규, 조효래, 조홍식, 조희정, 주선영, 진성미, 진영준, 진은영, 진태원, 차봉석, 차성연, 차유미, 채석용, 채수환, 채준호, 채형복, 천효범, 최갑수, 최관호, 최권호, 최동신, 최무영, 최병구, 최병해, 최성용, 최수일, 최영은, 최영호, 최옥선, 최용석, 최원배, 최인이, 최인철, 최일레, 최정은, 최정학, 최준용, 최진경, 최한미, 최한성, 최현, 최형미, 최혜경, 편상범, 하원수, 하재철, 한상희, 한유석, 한정숙, 한종호, 함현찬, 허창수, 현영석, 홍남선, 홍덕화, 홍승진, 홍용진, 홍일희, 홍지순, 홍진석, 황명환, 황설중, 황신해, 황용하, 황지현, 황태진, 황현일

### <번호사> (313명)

강기탁, 강문대, 강민희, 강보경, 강빈, 강서진, 강솔지, 강송욱, 강수영, 강영구, 강은옥, 강은희, 강지윤, 강현구, 강호민, 고부건, 고영구, 고윤덕, 고종윤, 곽예람, 구인호, 권규보, 권두섭, 권석현, 권숙권, 권영국, 권정호, 권태운, 권혁근, 권호현, 김기남, 김기동, 김남근, 김남주, 김남준, 김덕현, 김도현, 김도형, 김동균, 김동창, 김두나, 김두현, 김무락, 김민경, 김민주, 김병욱, 김상은, 김상현, 김성순, 김성주, 김성진, 김세희, 김소리, 김수영(a), 김수영(b), 김승진, 김영민, 김예지, 김원규, 김유정, 김은진, 김은호, 김재용, 김종귀, 김정보, 김종휘, 김주연, 김준우, 김준현, 김지미,

김진(a), 김진(b), 김진(c), 김진국, 김진형, 김차곤, 김철준, 김태형, 김필성, 김하경, 김하나, 김한주, 김행재, 김현승, 김형태, 김희진, 김희천, 나대현, 남성욱, 남호진, 노주희, 노푸른, 노혜성, 류다솔, 류신환, 류제두, 류제성, 류하경, 문은영, 민경한, 박갑주, 박경찬, 박남신, 박다혜, 박동민, 박민수, 박삼성, 박성호, 박연철, 박용범, 박인동, 박정민, 박준우, 박지아, 박지현, 박찬준, 박천우, 박치현, 박한희, 박현서, 박현용, 박현익, 방정환, 배보람, 배영철, 백수범, 백승현, 백신욱, 백일섭, 백주선, 범유경, 변영철, 봉하진, 서범진, 서상범, 서창효, 서채완, 서치원, 서희원, 성상희, 성상희, 성창익, 소라미, 손난주, 손명호, 손익찬, 손준호, 손지원, 손충환, 송기호, 송봉준, 송아람, 송지은, 송창운, 신미용, 신선아, 신윤경, 신의철, 신하나, 신훈민, 심재환, 안상배, 안영도, 안우혁, 안한진, 양성우, 양지연, 여연심, 오동현, 오민애, 오세범, 오지원, 오현희, 우아름, 우지연, 위은진, 유선호, 유승희, 유태영, 윤복남, 윤성봉, 윤세종, 윤수빈, 윤재철, 이경재, 이경환, 이나라, 이덕우, 이도경, 이동균, 이동우, 이두규, 이보람, 이상은, 이상희, 이석, 이석범, 이선민, 이성영, 이성진, 이수열, 이에린, 이영직, 이용우, 이용훈, 이원호, 이유정, 이은종, 이인람, 이재빈, 이재승, 이재원, 이재화, 이정민, 이제호, 이종훈, 이종희, 이주언, 이주희, 이준형, 이지영, 이진욱, 이찬진, 이창민, 이철원, 이푸른, 이학준, 이한분, 이환춘, 임상욱, 임상아, 임예지, 임자운, 장경욱, 장범식, 장서연, 장석대, 장석우, 장영석, 장완익, 장유식, 장주영, 장철순, 전다운, 전범진, 전수진, 전정환, 정관영, 정기호, 정미경, 정병민, 정병욱, 정상규, 정소연, 정수인, 정승균, 정연순, 정이량, 정인기, 정재성, 정재현, 정재형, 정정훈, 정준영, 조덕상, 조미연, 조민지, 조세현, 조세화, 조숙현, 조애진, 조연민, 조영관, 조영보, 조영선, 조영신, 조영은, 조윤희, 조지훈, 조현주, 조혜진, 좌세준, 차성욱, 차승호, 천낙봉, 최경아, 최명준, 최봉태, 최새얀, 최석균, 최성주, 최용근, 최재홍, 최종연, 최지연, 최진솔, 최현정, 탁선호, 표재진, 하경남, 하성협, 하주희, 하태승, 한명욱, 한택근, 한필운, 허자인, 홍의진, 황규수, 황규표, 황준협, 황필규, 황호준

#### <노무사> (223명)

강경모, 강경희, 강도연, 강두용, 강명신, 강민주, 강선목, 강성래, 강성희, 강수미, 강은솔, 강정국, 강진구, 고경섭, 고관홍, 고은선, 공성수, 구동훈, 권남표, 권동희, 권오상, 권오훈, 권태용, 기상균, 김경수, 김경주, 김경희, 김광일, 김기돈, 김기범, 김기홍, 김남수, 김명수, 김미영, 김민, 김민아, 김민욱, 김민지, 김민철, 김민호, 김

서룡, 김성호, 김세영, 김세정, 김세종, 김수정, 김스룡, 김승섭, 김승현, 김시운, 김영주, 김영훈, 김왕영, 김요한, 김용주, 김유경, 김유리, 김유정, 김은복, 김은풍, 김재광, 김재민, 김종진, 김종현, 김진영, 김철우, 김학진, 김한울, 김현근, 김현호, 김형기, 김혜선, 김훈녕, 남우근, 남현영, 노영민, 모영권, 문진숙, 민현기, 박경수, 박경순, 박경환, 박공식, 박대진, 박문순, 박민정, 박상희, 박선희, 박성우, 박소영, 박소희, 박영민, 박용원, 박윤진, 박은하, 박재철, 박정호, 박주영, 박준성, 박진남, 박현희, 박혜영, 배동산, 배현의, 변동현, 변수지, 서해든, 성명애, 손경미, 손진, 송아름, 신명근, 신은정, 신정인, 신지심, 심준형, 안현경, 양현, 엄진령, 여수진, 오세연, 유명환, 유상철, 유선경, 유성규, 윤대원, 윤선호, 윤주환, 윤효중, 이경석, 이경호, 이근탁, 이노하, 이다솜, 이동만, 이미소, 이민호, 이병훈, 이상권, 이상미, 이상운, 이서용진, 이석진, 이선이, 이성재, 이수정, 이슬아(a), 이슬아(b), 이승현, 이양지, 이연주, 이영록, 이오표, 이윤형, 이인찬, 이장우, 이재수, 이정미, 이종란, 이종인, 이진아, 이태진, 이하나, 이현중, 이혜수, 이호준, 임득균, 장환, 장미, 장영석, 장영철, 장종수, 장혜진, 전경진, 전은주, 정건, 정명아, 정문식, 정미선, 정상욱, 정송도, 정유진, 정윤각, 정윤희, 정지은, 정태권, 조명심, 조승규, 조영훈, 조윤희, 조은혜, 조주희, 주민영, 주형민, 지문조, 최강연, 최기일, 최승현, 최여울, 최연재, 최영연, 최영주, 최은실, 최지복, 최진수, 최진혁, 최혜인, 하운성, 하운수, 하은성, 하태현, 하해성, 한영수, 한태현, 허성희, 허용만, 허진구, 호영진, 홍관희, 황선호, 황재인, 황진구, 황철희

#### <기타> (4명)

김석초, 김영길, 김현주, 홍상기

[첨부 3]

## 일본 법률가 등 지지 선언 소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이라 함)은 2023. 6. 26.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거부권 운운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는 제목의 논평 (<http://minbyun.or.kr/?p=55126>)을 발표하였습니다.
  - 위 논평에 대해, 일본의 9개 법률가단체·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및 73명의 일본 변호사·연구자·활동가 여러분들이 연명해 주셨습니다(별첨 1: 연명 명단).
  
- 일본의 법률가단체인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은 2023. 11. 17. “한국 노조법 제 2조, 제3조 개정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단호히 반대한다!” 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위 개정법안의 조속한 성립을 촉구하였습니다(별첨 2: 오사카노동자변호단 2023. 11. 17.자 논평 - 원문 및 번역본).
  
- 오늘 전국의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들은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요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을 발표합니다.
  - 이에 맞춰 일본의 법률가단체인 “일본노동변호단” 은 이 선언에 동참하는 동시에, 노조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노동조합 권리 발전을 추구하는 한국 노동계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별첨 1]

민변의 2023. 6. 26.자 성명에 찬성하는  
일본의 9개 법률가단체·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및  
73명의 일본 변호사·연구자·활동가

■ 법률가단체·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연명순)

1. 오사카노동자변호단 (대표간사 平方かおる)
2. NPO법인 노동과 인권 서포트 센터·오사카
3. 미나미오사카평화인권연대회의 (의장 小林勝彦)
4. 전국금속기계노동조합 미나토합동 (위원장 中村吉政)
5.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 오사카부협의회 (오사카전노협, 대표자 의장대행 Dennis Tesolat)
6. 나카마유니온
7. 관리직유니온·간사이 (집행위원장 仲村 実)
8. 오사카교육합동노동조합
9. 일본노동변호단

■ 변호사 (63명, 연명순)

1. 平方かおる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일본노동변호단·오사카변호사회
2. 中村和雄 교토시
3. 池上 遊 기타큐슈시
4. 塩見卓也 오사카공립대학 특임교수
5. 上林 惠理子 오사카변호사회
6. 大賀浩一 삿포로변호사회·일본노동변호단·자유법조단
7. 中川 拓 규슈노동변호단
8. 中村優介 일본노동변호단
9. 上原康夫 오사카노동자변호단
10. 豊川義明 일본노동변호단·민주법률협회
11. 山本志都 도쿄변호사회
12. 魚住昭三 피스나우 법률사무소
13. 在間秀和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일본노동변호단
14. 小野順子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사무국장·일본노동변호단

- |           |              |
|-----------|--------------|
| 15. 谷 次郎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16. 三輪晃義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17. 村角明彦  | 오사카변호사회      |
| 18. 金 容洙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19. 七堂眞紀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20. 宮沢孝児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21. 高木佐知子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22. 牧野幸子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23. 空野佳弘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24. 奥山泰行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25. 森 博行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26. 藤原 航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27. 網本知晃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28. 丹羽雅雄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29. 大塚喜封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30. 近藤厚志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31. 中島光孝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32. 北本修二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33. 大山弘通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34. 冠木克彦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35. 武村二三夫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36. 里見和夫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37. 久堀 文  | 오사카변호사회      |
| 38. 浦 功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고문 |
| 39. 位田 浩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40. 大橋さゆり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41. 養父知美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42. 康 由美  | 오사카변호사회      |
| 43. 山内一浩  | 준포법률사무소      |
| 44. 高崎 暢  | 삿포로변호사회      |
| 45. 加藤桂子  | 도쿄변호사회       |
| 46. 藤井光男  | 오키나와변호사회     |
| 47. 嶋崎 量  | 카나가와종합법률사무소  |
| 48. 井上 啓  | 카나가와노동변호단    |
| 49. 水口洋介  |              |

- |           |                         |
|-----------|-------------------------|
| 50. 加藤文晴  | 삿포로변호사회, 일본노동변호단 북해도 블록 |
| 51. 菅 俊治  | 일본노동변호단                 |
| 52. 小田幸児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53. 高尾奈々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54. 市橋耕太  | 일본노동변호단                 |
| 55. 中野和子  |                         |
| 56. 加藤桂子  | 도쿄변호사회                  |
| 57. 山本志都  | 도쿄변호사회                  |
| 58. 中井雅人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59. 青木克也  | 민주법률협회                  |
| 60. 笠置裕亮  | 일본노동변호단                 |
| 61. 原野早知子 |                         |
| 62. 村田浩治  | 일본노동변호단·민주법률협회          |
| 63. 友弘克幸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 연구자 (5명, 연명순)

- |         |              |
|---------|--------------|
| 1. 緒方桂子 | 난잔대학         |
| 2. 西谷 敏 | 오사카시립대학 명예교수 |
| 3. 武井 寛 | 류코쿠대학        |
| 4. 脇田 滋 | 전·류코쿠대학      |
| 5. 松尾邦之 | 카가와대학 명예교수   |

■ 활동가 (5명, 연명순)

- |          |                  |
|----------|------------------|
| 1. 市原直尚  | 히메지 유니온          |
| 2. 長橋淳美  | 돈다바야시시 인권협의회     |
| 3. 鎌本文子  | 이쿠노의 인권을 생각하는 모임 |
| 4. 寺田正己  | 민주법률협회 외         |
| 5. 山口恵美子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사무국원   |

[별첨 2]

2023年11月17日

各 位

大阪労働者弁護団  
代表幹事 平方 かおる  
〒530-0047 大阪市北区西天満4-10-19-603  
電話 06-6364-8620 FAX 06-6364-8621

**韓国労組法第2条、第3条改正法案に対する  
大統領の拒否権行使に断固反対する！**

本年11月9日、韓国国会は本会議において労働組合法第2条及び同第3条の改正案を可決した。

改正法は、下請企業の労働者の労働条件について実質的に支配・決定できる「本当の社長」すなわち元請企業を「使用者」に含めて団体交渉の相手方とする道を開き、また、労働者個人に対する使用者からの損害賠償請求に一定の制限を加えるなどするもので、労働者、労働組合の労働基本権保障を実質化するものである。大幅な賃金減額があっても実質的に減額を支配した者とは交渉できない、ひとたびストライキを構えれば生涯賃金を超え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損害賠償を請求されるなど、韓国の労働者が置かれた過酷な権利状態を見直し、権利を実現するために一步前進した内容である。

韓国の労働者、労働組合はかかる権利を手にするため、これまで20年以上の長きにわたり、あるときは地道に、あるときは苛烈に、運動を重ねてきたと聞いている。

韓国国会による今回の改正法案の可決は、そのような労働者、労働組合の努力に報いる誠に正しい判断であった。我々大阪労働者弁護団は、日本の地において労働者、労働組合の権利擁護、権利実現を希求する弁護士集団であるが、全ての労働者の権利擁護、権利実現を求める立場から、韓国の労働者、労働組合、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など民主勢力と連帯するものである。尹錫悦大統領は、韓国の労働者の実態に目を背けることなく、国民の大多数を占める労働者が労働者としての権利を実現し、人間らしい暮らしを手に入れることができるよう、改正案に拒否権を行使せず、早期の改正労働組合法成立に尽力されるよう強く求めるものである。

以上

2023년 11월 17일

각 위

오사카노동자변호단  
대표간사 히라카타 카오루  
〒530-0047 오사카시 기타구 니시텐마 4-10-19-603  
전화 06-6364-8620 FAX 06-6364-8621

**한국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단호히 반대한다!**

올해 11월 9일, 한국 국회는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및 동 제3조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법은, 하청기업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진짜 사장' 즉 원청기업을 '사용자'에 포함시켜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노동자 개인에 대한 사용자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노동자,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실질화하는 것이다. 큰 폭의 임금 감액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감액을 지시한 자와는 교섭할 수 없고, 일단 파업에 관계하면 생애임금을 초과하는(혹은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등, 한국의 노동자가 처해 있는 가혹한 권리 상태를 검토하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진일보한 내용이다.

한국의 노동자, 노동조합은 이러한 권리를 손에 넣기 위해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긴 시간에 걸쳐, 때로는 견실하게, 때로는 가열차게 운동을 거듭해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국 국회의 금번 개정법안 통과는, 이러한 노동자·노동조합의 노력에 응답하는, 참으로 옳은 판단이었다. 우리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은, 일본 땅에서 노동자·노동조합의 권리옹호와 권리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 단체이나, 모든 노동자의 권리옹호와 권리실현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한국의 노동자·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민주세력과 연대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노동자의 실태를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 대다수를 점하는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실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속히 개정 노동조합법의 성립에 진력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첨부 4]







